

## 미국 군인 전역제도 -선별적 전역 제도를 중심으로-

정보신청기관 : 국방부

### 1. 서론

우리나라 군인사법에 의하면 모든 군인은 법률에 의해 복무기간이 정하여지고 복무기간이 종료하면 전역한다. 법령에 규정된 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는 원에 의해 전역할 수 있으며 (단 3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한 자는 원에 의하여 전역할 수 있다), 현역 정년에 달한 자 역시 법정 정년이 되면 당연 전역된다. 따라서 전역제도는 기본적으로 원에 의한 전역(군인사법 제35조)과 정년전역(군인사법 제36조)으로 구분된다.

정년전역의 경우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현역 정년의 종류와 기한은 다음 <표 1>과 같다.

그러나 정년이 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인이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전역될 수 있다(군인사법 제37조). 동 조항 및 시행령 관계조항에 의하면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다.

<표 1> 우리나라 현역 정년

구 분	연령정년	계급정년
장성급	원수	종신
	대장	63세
	중장	61세
	소장	59세
	준장	58세
영관급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45세
위관급	대위 이하	43세
준사관 및 부사관급	준사관	55세
	원사	55세
	상사	53세
	중사	45세
	하사	40세

-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자
- 관계규정상 동일계급에서 2회 진급낙천당한 장교(소위의 경우에는 1회)
- 병력감축 또는 복원시에 있어서 병력조정상 전역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자
- 다음의 이유로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 능력의 부족으로 당해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
- 성격상의 결함으로 현역에 복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직무수행을 포기하는 자
- 기타 군 발전에 저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상의 결함이 있는 자

(상기의 부적합자의 사유 및 구체적 예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군인사법상 대통령은 국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장관급 장교의 계급정년을 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각 군별로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 역시 군 구조개편, 직제개편, 인력조정 및 적체인력의 해소 등 각 군의 인력관리상 필요한 때 각 군 참모총장의 제청을 받아 영관급장교의 정년을 2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각 군별로 단축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시적이고 부정기적인 계급정년, 근속정년 및 연령정년의 단축보다 상설적으로 진급대상자 중 상대적으로 진급에 부적합자를 선별하여 전역토록 하는 제도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비교법적인 연구로서 미국의 개괄적 전역제도와 선별적 전역제도 등에 대해 소개하기로 한다. 미 군대 체계상 육·해·공군 및 해병대가 각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여 본 글에서는 상위법인 미 군인사법(Title 10, Subtitle A, Part II

Personnel, Chapter 33A, 36, 63, 65)과 육군 규정(600-8-24)을 참고로 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또한 미 정부의 정부구조상 지휘체계상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의 장관을 국방부장관(Secretary of Defense)으로 군사부(Department of Military)의 장관들(Secretary of Army 등)을 관계 장관으로 칭한다.

## 2. 미국의 군 전역 제도 개관

미국 군인사법에 따르면 전역제도는 크게 원에 의한 전역(자발적 전역:voluntary retirements)과 정년전역(mandatory retirements)으로 구분된다. 정년전역은 연령에 따른 전역, 복무기간에 따른 전역으로 구분되며 각 군의 규정에 따라 계급정년도 병행적으로 실시된다. 그리고 현역 군인으로서 요구되는 신체적 능력의 후발적 부적합으로 전역되는 제도가 있다. 이외에도 상근근무지변경에 갈음한 전역(retirement in lieu of permanent change of station)과 조기선별전역제도(selective early retirement)가 있다.

### (1) 원에 의한 전역

원에 의한 전역의 경우 예비역 장교는 전현직 포함 20년을 복무한 경우 또는 현역 장교는 10년 복무한 경우 관계 장관의 승인 후 전역 및 퇴역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Secretary of Defense)은 육군장관에게 2006년 1월 6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상기의 10년 복무기간을 8년으로 감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군병

력과 지휘관 수급상황을 조정 한 바 있다. 그러나 상기의 기간을 복무하였다 할지라도 계급별로 다음과 같은 일정 기간을 복무하여야 전역을 신청할 수 있다.

- 준위: 준위로 진급한 후 30일 이상
- 소령: 소령으로 진급한 후 6개월 이상
- 중령-소장: 현 계급에서 3년 이상

그러나 40년 이상 복무한 장교 또는 준위가 전역을 요청하는 경우 관계 장관은 상기의 기간과 상관없이 전역을 명하여야 한다. 중장과 대장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해당자가 근무를 성실히 임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한 후에야 원에 의한 전역을 할 수 있다. 복무기간은 모든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하며 외국에서의 복무기간도 합산된다. 군의장교의 경우 계약 군의관의 기간도 포함되며 군의관 직무대리의 기간도 합산된다. 군사법정에 제소된 경우에는 소송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원에 의한 전역을 신청할 수 없다.

## (2) 연령에 따른 전역(Retirement due to Maximum Age)

일반적으로 준장 이하의 일반 장교들은 62세 정년으로, 62세가 되는 달 다음 달 첫 날에 전역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관계 장관은 군의관(치과의 포함) 및 군 간호관 등 군의장교 및 군목사, 군 신부 등 군종장교의 경우 62세가 되어도 해당 장교 인력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이들의 전역

을 유예할 수 있다. 관계 장관은 해당 장교의 전역 유예 결정에 있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결정되어야 하나 그 유예는 68세를 넘지 못한다. 군 사관학교의 전임교수 또는 입학담당관의 경우 64세에 정년 전역한다. 준장 이상의 장성들의 경우 64세에 정년 전역한다. 그러나 중장과 대장의 경우 국방부장관에 의해서는 66세까지 그리고 대통령에 의해 68세까지 전역이 유예될 수 있다.

장교가 아닌 준위들의 경우 62세의 연령정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최소 20년 이상 현직에서 근무한 정규 상임 준위들은 62세가 되는 달 이후 두 달 내 전역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체검사 결과나 신체적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입원이 요구되며 치료가 해당 전역일까지 완료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4개월 이내에서 전역을 유예할 수 있다. 모든 전역의 경우 전역일자로부터 9개월 전에 전역통지서가 전역예정자에게 고지되어야 하며, 전역통지서에는 그 동안의 복무에 대한 감사와 함께 해당자가 알고 있는 질병에 대해 치료가 가능한 시설의 연락처 등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3) 복무기간에 따른 전역(Retirement due to Maximum Service)

미 군인사법과 관계 규정에 따르면 계급별로 일정 기간 근무한 경우 전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전체의 근속 기간과 계급정년이 중복되어 적용된다.

위관급의 경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위: 계급정년 6년
- 중위: 대위 승진에서 2번 낙천한 경우 6개월 후
- 대위: 소령 승진에서 2번 낙천한 경우 6개월 후

영관급의 경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령: 중령 승진에서 2번 낙천한 경우 6개월 후
- 중령: 장교복무기간 28년
- 대령: 장교복무기간 30년

장성급의 경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준장: 계급정년 5년 또는 장교복무기간 30년
- 소장: 계급정년 5년 또는 장교복무기간 35년
- 중장: 계급정년 5년 또는 장교복무기간 38년
- 대장: 계급정년 5년 또는 장교복무기간 40년

30년 이상 복무한 육군사관학교 전임교수나 입학담당관의 경우 육군장관이 전역시킬 수 있다. 육군사관학교장의 경우 학교장에서 사임하는 경우, 육군장관은 사임된 장교가 동법에 의한 전역시기가 지난 경우 전역시켜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장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하원과 상원의 국방위원회에 전역시키지 않는 충분한 이유서와 대통령의 서면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준위의 경우 준위 복무기간이 30년 60일이 지나면 전역하여야 한다. 육군장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20년 이상 30년 이하 복무한 자원병의 경우 해당 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역시킬 수 있다. 30년 이상 복무한 자원병의 요청이 있는 경

우 전역시켜야 한다. 복무기간은 모든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며 외국에서의 복무기간도 합산된다. 군의장교의 경우 계약 군의관의 기간도 포함되며 군의관 직무대리의 기간도 합산된다. 복무기간에 따른 전역의 경우 전역일자로부터 9개월 전에 전역통지서가 전역예정자에게 고지되어야 한다. 전역 예정서에는 그 동안의 복무에 대한 감사와 함께 해당자가 알고 있는 질병에 대해 치료가 가능한 시설의 연락처 등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3. 미국 군인사법상 선별적 전역제도

#### (1) 선별적 전역제도의 목적

미국 군인사법에 의하면 일반적 전역과 신체적 능력 전역 외에도 지휘관의 수급상황에 따라 지휘관 수 조정을 위해 선별적 전역(Selective retirement)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장교의 경우 조기 선별 전역(selective early retirement), 준위의 경우 선별적 전역(selective retirement)이라 지칭한다. 동 제도의 목적은 지휘관 수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진급대상자의 고령화를 제한하기 위함이며, 승진기회를 높이기 위하거나 퇴역 처분을 앞둔 장교를 위한 대체 처분을 하기 위함이다.

#### (2) 선별적 전역제도의 대상

조기 선별 전역제도는 육군뿐 아니라 해군, 공군 및 해병대에도 적용되며 제한적인 계급에서만 실시된다. 예비역 장교에게는 이와 유사한 조

기선별퇴역제도가 있다. 육해공 및 해병대의 일반 현역 장교 중 다음에 해당할 경우 선발위원회(selection board)에 제출되는 조기 선별 전역자 대상자가 된다.

- 중령 계급에 있는 자로서 두 번 이상 대령 진급에 실패하고 진급추천 대상에 있지 아니한 자
- 4년 이상 대령 계급으로 현직에 있는 자로서 진급추천 대상에 있지 아니한 자
- 3년 반 이상 준장 계급으로 현직에 있는 자로서 진급추천 대상에 있지 아니한 자
- 3년 반 이상 소장 계급으로 현직에 있는 자

선별적 전역의 대상이 되는 자는 각 군의 규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육군 규정에 따르면 상기의 중령에서 소장의 계급 외에도 준위, 대위 및 소령도 다음의 경우 그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 W-1 이상의 준위의 경우 승진대상자 명부에 있지 아니하며 관계 규정에 의해 전역의 자격이 있는 자
- 대위의 경우, 소령으로 승진대상명부에 있지 아니하며 관계 규정에 의해 현재 전역의 자격이 있거나 향후 2년 내외에 전역 자격이 있는 자
- 소령의 경우, 중령으로 승진대상명부에 있지 아니하며 관계 규정에 의해 현재 전역의 자격이 있거나 향후 2년 내외에 전역 자격이 있는 자

상기의 조건에 부합하는 자라 할지라도 원에 의한 전역이 승인된 자나 선발 위원회가 소집된 해 또는 다음해에 비자발적으로 전역할 자는 선별적 조기 전역자 대상이 되지 않는다. 관계 국방부장관은 영관급 장교의 조기 선별전역자의 정원을 정하여 선발위원회에 해당자의 추천을 요구하되 해당 정원은 각 계급의 진급대상자의 수의 30%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준장 이하의 장교가 동일계급을 유지하고 있는 한 5년 주기별로 한번 이상 조기 전역 대상자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즉 5년에 한 번만 대상자가 됨). 선별적 전역제도는 장교 외에 준위(warrant officer) 계급에도 준용되어 두 번 이상 진급에 실패하고 진급추천 대상에 있지 아니한 준위의 경우 관계 장관에 의해 승인받은 날로부터 만 6개월 이내에 전역하여야 한다.

### (3) 절차 규정

국방부장관은 조기전역제도의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동 규정은 국방부장관이 선발위원회에 조기 전역을 위한 장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할 시기 등을 포함한 절차적인 내용을 규정한다. 선별적 전역제도의 절차 등에 대해서 국방부 지침(Directive) 1332.32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1996년 9월 30일 제정된 지침을 갈음하여 현역 장교 및 준위의 조기선별전역과 예비역 장교의 조기선별퇴역을 위한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2006년 12월 27일 새로운 지침을 작성하였다. 동 지침에 따르면 조기 전역 선별을 검토하기 위한 선발위원회는 관계 장관에 의해 군사적 필요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

단될 때 소집된다. 위원회는 대상자의 현 계급별 또는 일정 계급의 승진대상자별로 별도로 구성된다. 각 주의 주방위군의 선별적 전역 및 퇴역 제도의 운영을 위한 위원회 구성은 주 헌법의 절차적 제도에 반하지 않는 한 동 지침을 준용한다.

선발절차상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하기 위해 중앙집중적 선별을 한다. 선발 대상군은 동일 계급에 있는 대상자 또는 일정 계급의 승진대상자이며 나이별로 군을 구성하지 않는다. 각 군 장관들은 선발위원회에 서면 지시서를 발급하되 해당 지시서 및 지시서에 담긴 정보 및 지침 등은 위원회가 위원회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는 보완 및 수정될 수 없다. 관계 장관은 서면지시서와 함께 위원회에 선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에는 최소한 위원회가 추천하여야 할 조기 전역 및 퇴역자의 수, 모든 선발 대상자의 이름, 계급(계급 내에서의 상하 포함), 직책 및 관계 장관이 정한 선발을 위해 필요한 기타 적절한 기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기 선별 전역자로 선별될 경우 Deputy Chief of Staff, G-1의 서명이 담긴 조기 선별 전역 통지서가 근무지 해당 부서의 사령관을 통해 개인적으로 전달된다. 해당 통지서에는 상기의 선별 내용과 그동안의 근무내용 및 행정절차가 기재되고 그리고 전역신청서가 첨부된다.

#### (4) 선별적 전역의 효과

준장 이하의 장교로서 조기전역자로 추천되고 관계 장관에 의해 조기 전역이 승인된 자는 본인이 신청하고 관계 장관에 의해 승인받은 날로부

터 만 6개월 이내에 그리고 준장 및 소장의 경우 만 9개월 이내에 전역하여야 한다. 관계 장관은 조기 전역자로 승인 받은 자가 개인적 사정 또는 기타 인도적 관점에서 특별히 고려할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장교의 전역을 90일 동안 유예할 수 있다. 이러한 유예 결정은 개개인의 사안별로 결정되어야 하며 유예결정권은 위임되어서는 안 된다. 동 제도에 의해 조기 전역된 장교는 군 인사법상 원에 의하지 않은 전역자로서 간주된다.

#### 4. 결론

미국의 군 인사법상 전역제도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나 우리나라에서는 폐지된 근속기간이 존재하며 연령제한에서도 다소 차이가 있다. 다음 <표 2>는 상기의 규정과 규칙을 중심으로 작성한 미군 계급별 현역 정년에 관한 표이다.

미국의 경우 지휘관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지휘관의 수를 조정하기 위해 선별적 전역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지휘관 수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진급대상자의 고령화를 제한하여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이해된다. 즉, 일정 계급의 지휘관 중 해당 계급에서 근속연수가 어느 정도 있으면서 진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들을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검토하여 조기전역자로 선발한 후 강제 전역시키고 있다. 그 대상은 모든 계급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선 지휘관 수준의 중령에서 소장으로 제한적인 범위로 규정되어 있으나 각 군은 각 군 자체 규정에 따라서 이를 유동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표 2〉 미국 군인 현역 정년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	비고
장성급	원수				전시에만 있음.
	대장	64세	40년	5년	대통령 유예 시 68세/국방부장관 유예시 66세
	중장		38년		
	소장		35년		
	준장		30년		
영관급	대령	62세	30년		군의관, 군종관 68세까지 유예 가능, 군사관학교 전임교수 및 입학담당관 64세까지 유예가능
	중령	62세	28년		
	소령	62세	24년		
위관급	대위	62세		2번 진급 낙천 후 6개월	
	중위	62세			
	소위	62세			
	준위	62세	30년 60일		

우리나라 군인사법 역시 동일계급에서 2회 진급낙천당한 장교(소위의 경우에는 1회)의 경우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전역시키는 유사한 제도가 있으나 미국의 선별적 전역제도는 일정 계급에서(중령, 대령, 소장의 경우) 진급 낙천과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따라 모두 선별적 전역의 심사대상이 된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소 병 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외국법제조사위원)